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17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외 11명 발의)
-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살률 (10만명당) 25.6명('16) ** OECD 평균 자살률 12.1명('17 발표)]. 자살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살에 대한 자극적 언론보도 태도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
- 나. 그러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11년) 및 시행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분야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자살예방의 날’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의 날’ 조항을 신설. (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자살예방의 날’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은 자살예방주간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서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관련하여 2019년 아래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였음.

- 사 업 명 : 2019년 자살예방의 날 행사 ‘생명사랑 시민 페스티벌’
- 목 적 :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자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함
-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12:00~17:00
- 대 상 : 서울시민, 자살예방지킴이,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등
- 장 소 : 광화문 서울광장, KT Square 드림홀
 (서울시 종로구 소재)
- 행사구성 : 광화문 서울광장 - 자살예방 관련 행사 부스 운영
 KT Square 드림홀 - 마음이음 콘서트

- 그러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서는 자살예방주
간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며 1회성에 그칠 수 있는 이벤
트성 행사를 지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3 집행부서 의견

- 서울시 집행부는 해당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
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집행부의 찬성의견이 있는 바 해당 조례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